

참고1

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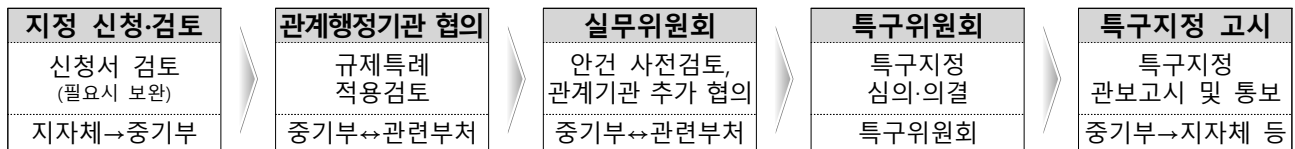
□ 배경 및 절차

- (배경) 지역 균형발전,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 (지역특구법, '04~)

*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·세제 지원은 없음

- (절차)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)가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 → 부처협의 및 특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

< 지역특구 지정절차 >



□ 규제특례 현황

- 「지역특구법」 상 총 129개 규제특례(59개 개별법) 중 해당 지자체의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특례를 특구 내 적용 가능

< 주요 내용 >

구분	적용 특례	구분	적용 특례
일반 (62개)	옥외광고물 표시·설치	토지 이용 (54개)	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
	도로통행 제한		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
	농지의 위탁경영 / 임대·사용		농업진흥지역 해제
	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		도시계획시설의 결정
	도로점용 허용	이양 (13개)	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
	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		식품 표시기준 완화
	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		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

□ 지정 현황 : 현재 171개 특구* (135개 시군구)가 지정·운영 중('25.11. 기준)

* '04년 제도 도입 이후, 230개 특구가 신규지정 되었고 59개 특구가 해제·통합

< 지역별 특구현황 >

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합계
10	6	5	2	3	1	4	19	13	16	16	12	29	20	13	2	171